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6월 12일, 어기구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6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2. 4.)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2.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여기구 의원)

한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으로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 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식품·외식 산업 활성화 등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따라 한식의 문화적·경제적 가치 창출 역할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법정 기념일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 결과¹⁾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식도락관광’(59.8%)이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여 한식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줌.

또한, 발효식품 등 한식 관련 농식품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여 김치의 수출량은 2012년 2만 7,700톤에서 2024년 4만 7,100톤으로 170% 성장하였고, 고추장 역시 같은 기간 1만 톤에서 2만 6,300톤으로 263% 증가, 간장과 된장도 각각 수출량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주요 한식 제품 수출 현황]

구분	수출량(수출액)		성장률 (2012년→ 2024년)
	2012년	2024년	
김치	27.7천톤 (106.6백만불)	47.1천톤 (163.6백만불)	170%
고추장	10.0천톤 (23.7백만불)	26.3천톤 (62.3백만불)	263%
간장	11.1천톤 (13.9백만불)	16.1천톤 (19.3백만불)	145%
된장	3.6천톤 (6.2백만불)	5.6천톤 (10.8백만불)	15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러한 한식 산업의 성장과 세계적 관심 증대는 국산 농식품의 소비와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한식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국내 농가 역시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²⁾가 만들

1) 「2023 외래관광객 조사 결과」(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방한외국인 대상)

- 방한 고려요인 : 1위 식도락관광(59.8%) > 2위 쇼핑(57.9%) > 3위 자연 풍경 감상(36.4%)

어지고 있다고 할 것임.

개정안은 한식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한식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한식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국내 관광수요의 증진, 한식 제품 수출 증가 등 한식을 진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 시에는 ① 한식의 날 명칭과 ② 기념일 날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먼저, ‘한식의 날’ 명칭에 대해 살펴보면,

유사한 명칭의 날로 명절인 ‘한식(寒食)’이 2023년 12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음.

한식(寒食)날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³⁾로,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을 의미함. 이 날은 조선시대 4대 명절로 기록되고 있으며, 현재도 성묘, 벌초, 한식 제사 등 조상 추모 의례가 전승되고 있고, 문중을 중심으로 유교적 제례가 강조되고 있음.⁴⁾

이러한 ‘한식(寒食)’날은 상당수 달력에서 한자를 제외한 한글 ‘한식’으로 표시되고 있고,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한식의 날’과 음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혼동의 여지가 있어 보임.

2)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제조기업에 대해 국산농산물 구매 비율이 높은 경우에 저리의 융자자금을 지원 하는 등 각종 정책을 통하여 국산농산물 사용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촉진하고 있음.

3) 보통 4월 초에 해당

4)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한식(寒食) 소개

[한식(寒食) 달력 표기 예시]

2025 4 April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노동조합창립기념일/수산인의 날 2 음 3.5		3 4·3 희생자추념일	4 예비군의 날 / 청명 / 음 3.7	5 식목일 <u>한식</u> / 음 3.8

※ 한국농어촌공사 2025년 달력

따라서 기념일의 명칭을 “한국 음식의 날” 또는 “한국 음식문화의 날”과 같이 보다 직관적인 기념일명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기념일 날짜 10월 10일에 대해 살펴보면,

개정안은 한식에 대해 열 손가락의 손맛으로 완성되는 음식의 정성을 상징하기 위하여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10월 9일 한글날에 이어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에 대한 의미 있는 기념일이 연속되어 기념일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보임.

다만, 현재 10월 10일에는 ① 임산부의 날, ② 여성어업인의 날, ③ 정신건강의 날이 각각 개별법⁵⁾에 따라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5) ① 「모자보건법」 제3조의2, ②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3조의2, ③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수의 기념일이 겹쳐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낮아질 수 있고,

또한, 추석 연휴는 대체로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에 위치⁶⁾하고 있으므로, 추석연휴와 기념일(10월 10일)이 가까워 관련 행사의 흥행성이나 효과성이 낮아질 우려도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식의 날을 10월 24일로 지정하는 방안⁷⁾도 제기되고 있음. 이는 10월 말에 다양한 식품행사가 개최⁸⁾되고 있으므로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해 농사의 수확을 마치는 10월, 한국의 계절 변화에 따라 식재료 및 조리법이 달라지므로 24절기를 연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절과 자연, 전통과 조화의 가치를 담으려는 취지임.

이를 종합하면, 개정안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인 한식에 대한 기념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이나,

유사명칭의 명절 존재, 동일 날짜에 기념일 다수 지정 등⁹⁾을 감안하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 명칭 및 날짜 변경을 고려할 수 있어 보임.

6) 음력 8월 15일, 추석은 대체로 양력 9월 6일에서 10월 9일 사이에 위치함.

7)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제출

8) 주요 식품 행사: 한식 국제컨퍼런스('24.10.25.), 대한민국 우리 술 대축제('24.11.15~17.),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24.11.14.)

9) 한편, 대한민국의한식협회는 2022년에 '한식의 날' 및 '세계 한식의 날'에 대한 업무표장을 등록하였고, '한식의 날' 명칭의 사용 범위나 방식에 대한 사전 협의 필요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특허청 법률고문 등에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업무표장은 문자, 도형, 색채가 전체적으로 결합한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한식의 날' 문구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식 관련 대표적인 행사는 ① '대한민국한식협회'가 주최하는 한식의날 대축제와 ② '대한민국한식포럼'이 주최하는 한국식문화세계화 대축제가 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음([참고자료 1] 참조).

한편, 개정안을 채택하는 경우,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개정안의 조문 위치 이동을 고려할 수 있어 보임.

개정안은 조문위치를 제16조의2에 신설하고 있는데, 기념일 규정의 위치에 대하여 정해진 규칙은 없으나, 다른 입법례에서 제1장 총칙 또는 초반부에 기념일 규정이 위치한 경우가 많은 점¹⁰⁾을 감안하여, 조문 위치를 제3조(한식 진흥 시책의 강구)¹¹⁾ 다음인 제3조의2로 수정하는 방안¹²⁾에 대해 추가적인 고려가 가능해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의 홍보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기념일 주간(한식주간)’을 ‘한식의 날’ 기념일과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10) 개별법률에 따라 지정된 147개 기념일 중 77개 기념일이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위치하고 있음.(2025.7.19. 기준)

11) 「한식진흥법」

제3조(한식 진흥 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발굴·복원과 계승·발전, 제도개선과 재원 확보,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정가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부대의견

없음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동일 날짜에 기념일이 다수 지정된 현황을 감안하여 한식의 날을 10월 24일로 변경하고, 한식 홍보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한식 주간을 함께 도입하며, 법 체계를 고려하여 조항의 위치를 변경함 (안 제3조의2).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의2를 제3조의2로 하고, 제3조의2(종전의 제16조의2)제1항 중 “10일”을 “24일”로, “한다”를 “하며,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한다”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u>제16조의2(한식의 날)</u> ① <u>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u> <u>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한다.</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식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u>	<u>제3조의2(한식의 날)</u> ① ----- ----- ----- ----- -----<u>24일</u>----- -----<u>하며, 한식의 날부터 1주일을 한식 주간으로 정한다.</u> ② (개정안과 같음)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식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한식의 날) ①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하며,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식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한식의 날) ①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하며,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식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u>